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비율 현황

김동겸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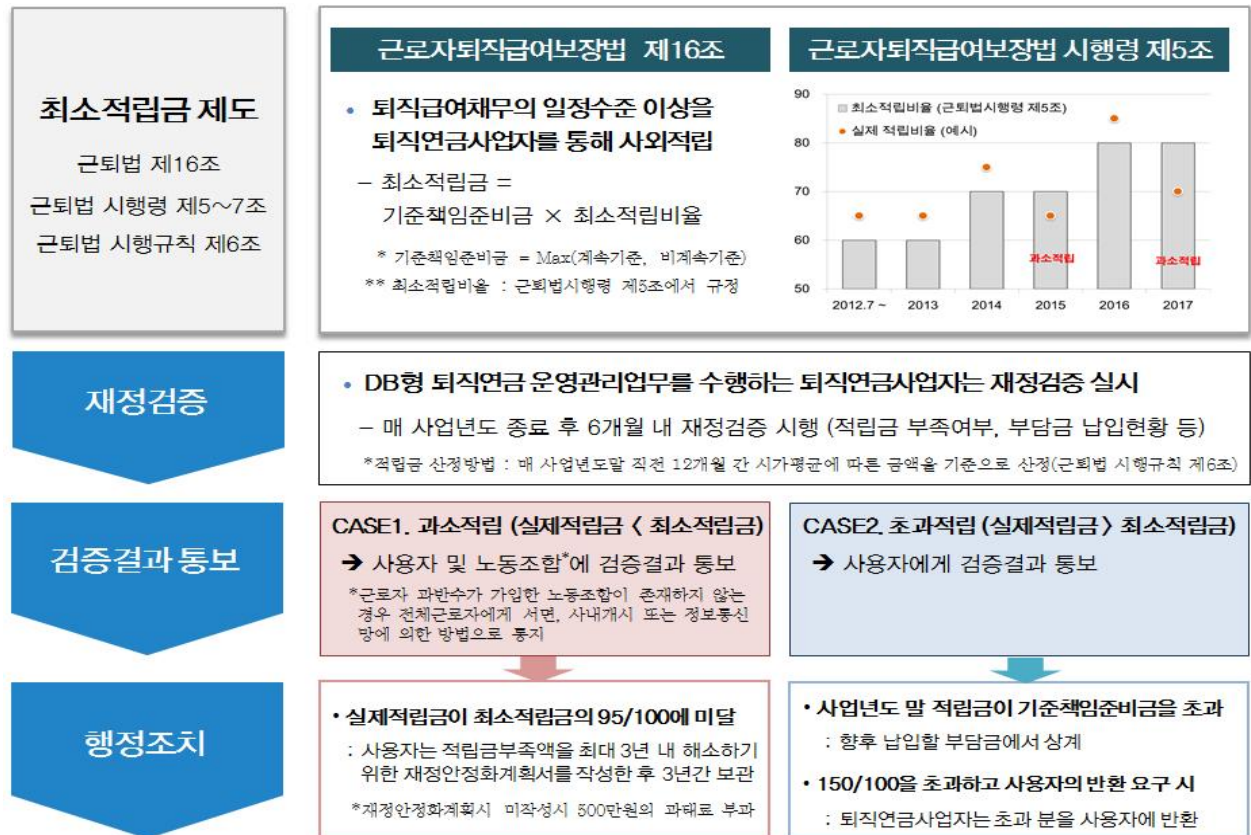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수령하게 되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급여채무의 일정수준 이상을 최소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 따르면 최소적립비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2017년 기준 80%로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용 중인 전체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최소적립금보다 적게 적립하고 있어 급여지급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음

■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급여¹⁾가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최소적립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음²⁾

- 최소적립금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채무의 일정수준 이상을 사외적립토록 한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에서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에 기준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 이상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기준책임준비금은 계속기준 방식과 비계속기준 방식을 통한 산정액 중 큰 금액을 의미함⁴⁾

- 1)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설정하여 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 2)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부분사외적립(기준책임준비금의 60% 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급여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전액(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사외적립하도록 규정함(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 이라 함)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 이라 함)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 4) 비계속기준 방식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근로자 전원이 퇴직한다는 가정 하에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반면, 계속기준 방식은 기업이 지속되는 가정하에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근로자가 향후 은퇴시점까지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산출하는 방식임(이자율, 임금인상률, 퇴직률 등을 반영)

〈그림 1〉 우리나라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규제(최소적립금 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7년 기준 DB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기존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은 80%로 설정되어 있음

-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은 2005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2012년까지 60%를 유지해오다 2012년 근퇴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옴⁵⁾
 - 한편,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⁶⁾을 통해 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DB형 제도의 사외적립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발표함
- 최소적립비율은 현재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업이 도산할 경우 20%의 적립부족이 발생해 근로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음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최소적립비율이 100%(완전적립)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초과적립(독일: 104.5%, 네덜란드: 105%)하고 있음⁷⁾

5) (1) 2012년 7월 26일~2013년 12월 31일: 60%, (2) 2014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70%, (3) 201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80%, (4) 2018년 1월 1일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80% 이상의 비율

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 8. 27),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7) NAPF(2008), UK Pensions Regulation Compa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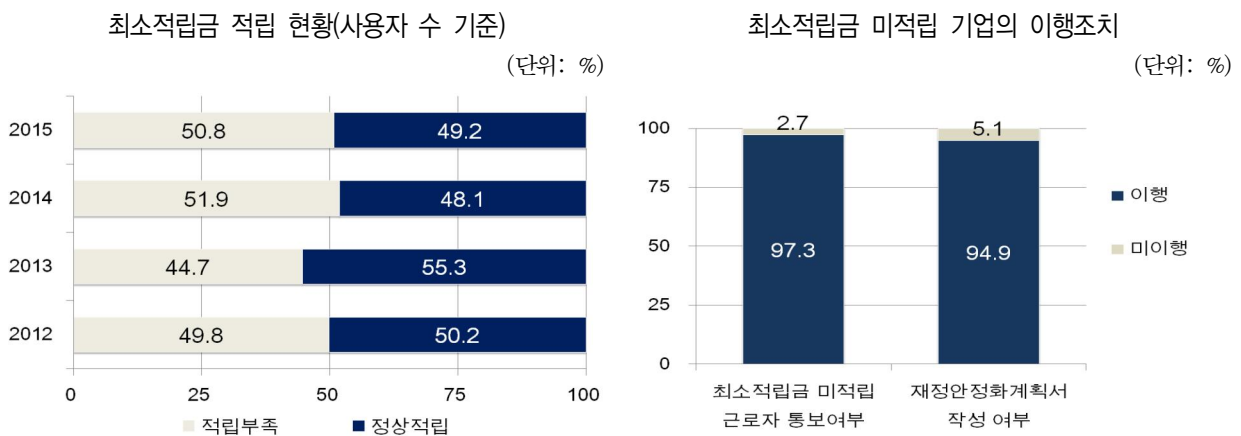
■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각 기업이 운영 중인 DB형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 사업년도 말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정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함

- 재정검증결과 적립금액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거나 사내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함
 -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 시 사용자는 부족액을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방안, 특별부담금⁸⁾ 납입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함
 - 사용자가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⁹⁾

■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2017)¹⁰⁾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최소적립금보다 적게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급여지급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기준 98,457개 기업 중 부담금을 최소적립금보다 적게 적립한 기업은 50,010개 기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소적립금 미충족 여부를 고지받지 못한 사업장 수는 총 대상사업장의 2.6%에 달하고 있으며,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대상 사용자 중 5.1%는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kiri**

〈그림 2〉 DB형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 현황



주: 최소적립금 미달 시 근로자에 대한 통보여부실태는 통보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감사원(2017)

8) 재정검증을 통해 적립금 부족이 발생할 때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2조

10) 감사원(2017),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